2020년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⑧책형 해설

- 0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 ③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은 비록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 ④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해설||

- ① [x] 비례의 원칙은 모든 행정분야 및 모든 행정권 행사에 적용된다. 주로 재량행위의 통제법리가 된다.
- ② [x] 신뢰보호의 원칙 요건인 선행조치는 적극적 언동뿐만 아니라 소극적 언동(장기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 [판례]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 <u>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나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u>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u>신뢰의 이익과</u>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하다. (대판 1987. 9. 8. 87누373)
- ③ [x]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u>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장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u>,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u>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u>. (대판 1999. 8. 20. 99두2611)
- ④ [O] <u>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u> 그 정한 바에 따라 <u>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2018서7, 2016국7} (대판 2009, 12, 24, 2009두7967)</u>

정답 ④

- 0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청문은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 ④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 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① [x]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019국9, 2019서9} (대판 2014, 10, 27, 2012 두7745)
- ② [x]「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청문회 개최사유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공청회 개최사유	-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018서의, 2017국7 (대판 2003. 11. 28. 2003두 674)

④ [〇]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19시7, 2019시7} (대판 2004. 7. 8. 2002두8350)

정답 ④

03. 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 ③ 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불이행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〇] <u>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u>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6. 6. 28. 96누4374)
- ② [x]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u>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u>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u>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2019서7. 2018적9</u> (대판 1994. 10. 28. 94누5144)
- ③ [O] 건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u>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u> (대판 1996. 10. 11. 96누8086)

④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비용	제5조 (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 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②

-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 ②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 ③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징수될 수 있다.

- ① [O] <u>이행강제금은</u>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u>이른바 침익적 행정행</u> 위에 속하므로 그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회수 등이 <u>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여져야 하고</u>, 위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도 그 요건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해져야 한다. (현재 2000. 3. 30. 98헌가8)
- ② [○] 이행강제금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 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0국회8. 2017 교병 (현재 2011. 10. 25. 2009헌바140)
- ③ [x]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u>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u>. 2020^{국회8} (현재 2004. 2. 26. 2001헌바80,84,102,103,2002 헌바26)
- ④ [○] 「건축법」 제80조 5항.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는 다음과 같다.)

철거명령 및 시정명령(1차)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79조 제1항)
[이하 제80조] 시정명령(2차) 불이행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u>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u> .
계고처분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u> <u>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u> ^{2019지9}
이행강제금의 부과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019서7, 2015서7 〈개정 및 시행 2019. 4. 23.〉
시정명령이 이행된 경우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u>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u> 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018국7, 2017지9하}

정답 ③

- 0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②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① [x]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에 적용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u>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u>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x] 공법관계 중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처분)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된다.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인 민사소송과는 구별된다.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제3조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행정소송의 종류)

-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u>그 밖에 공법상의</u>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③ [x] 행정주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국고로서의 국가행위는 사법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 행정주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일 수도 있고 공법상 계약일 수도 있다.

[판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u>사법(私法)상의 계약</u>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다를 바가 없다. (대결 2006. 6. 19. 2006마117)

[판례2]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95. 12. 22. 95누4636)

④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에 관한 분쟁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구 예산회계법(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5의 입찰보증금은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u>입찰보증금의</u>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판 1983. 12. 27. 81누366)

정답 ④

06. 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 ③「행정절차법」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의무 이행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 ④「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해설||

- ① [×]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 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판(전) 2010. 11. 18. 2008두167) [해설: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지만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긍 정한 판례]
- ② [O] <u>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u>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u>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u>. (대판(전) 2011. 1. 20. 2010두14954)
- ③ [〇] 「행정절차법」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
	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④ [O] <u>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u>. (대판 2009. 4. 23. 2008도6829)

정답 ①

07.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운전면허에 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 L.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 ㄷ.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 라.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 ① ㄱ, ㄴ
- ② ∟, ⊏
- ③ 7, ∟, ⊏
- ④ 7, ∟, ⊏, ⊒

|| 해설||

① [행정규칙] <u>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u>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 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u>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u>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대판 1991. 1. 15. 90누7630)

[동일취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대판 2007. 9. 20. 2007두6946)

- © [행정규칙]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u>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u>. ^{2019서7} (대결 2006. 4. 28. 2003마715)
- © [행정규칙] <u>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u> 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대판 2012. 7. 5. 2010다72076)
- ② [행정규칙]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u>행정명령의 성격</u>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6국7} (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정답 ④

- 0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하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 ②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 <u>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u>.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u>토지의</u>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이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17. 10. 12. 2017두48956)
- ② [〇]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고,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1. 2. 9. 98두17593)
- ③ [×]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적정한 처분의 정도를 판단하여 그 초과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u>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u> 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대판 2009. 6. 23. 2007두18062)

④ [〇]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및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 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도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017지의하 (대판 2001. 1. 19. 99두 3812)

정답 ③

09.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 ㄴ.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 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 C.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 ⊏
- ③ ⊏, ⊒
- ④ 기, ㄴ, ㄹ

|| 해설||

- [1] ① [O]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 [2] ① [○]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② [×]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판(전) 1996. 5. 16. 95누 4810)

② [x]

[판례1]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u>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u>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대판 2001. 12. 11. 2001두7541)

[판례2]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이후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u>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u>. (대판(전) 2009. 9. 17. 2007다2428)

정답 ①

- 1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할 수 없다.

- ① [x] <u>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된 행정행위이다(</u>그러나 주된 행정위와의 부종성은 인정됨). 따라서 <u>부담만이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u>해설② 참고).
- ② [×]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판 2001. 6. 15. 99두509)
- ③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u>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u>을 붙인 것이고, <u>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u>. (대판 1993. 10. 8. 93누2032)
- ④ [x]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u>일방적으로 부가</u>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u>상대방과 협의하</u> 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정답 ③

- 11.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 ① 기관소송
- ② 무효등 확인소송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④ 취소소송

① [x] 행정소송법은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관소송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에 의한 소송이 인정된다(통설).

제45조	
세43소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소의 제기)	
(꼬리 제기)	

② [○] ③ [○] ④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다.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레/포/하다 사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제4조(항고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u>부작위위법확인소송</u>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정답 ①

- 1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해설 ||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u>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u>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① [〇] 취소심판
- ② [〇] 의무이행심판
- ③ [〇] 무효등확인심판으로서 처분'부존재'확인심판은 가능하나 <u>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u>(제43조 제4항 참고).
- ④ [x] <u>취소심판의 대상인 처분에는 거부처분도 포함</u>된다.

정답 ④

13. 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① ~ @에 들어갈 내용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bigcirc)부터 (\bigcirc)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bigcirc)을 (\bigcirc)부터 기산한다.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bigcirc)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 </u>	<u>L</u>	<u>©</u>	<u>e</u>	<u> </u>
1	있은 날	30일	결정서의 정본	통지받은 날	180일
2	있음을 안 날	90일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	1년
3	있은 날	1년	결정서의 부본	통지받은 날	2년
4	있음을 안 날	1년	재결서의 부본	송달받은 날	3년

|| 해설 || 「행정소송법」

	① 취소소송은 <u>처분등이 (①있음을 안 날)부터 (②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u> . 다만, 제18
	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TUOO T (TU L 7171)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u>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u>
제20조(제소기간)	<u>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u> .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回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②

1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 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의 신청권이 있다.
- ②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 ③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④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해설||

- ① [O]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u>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u> 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대판 2015. 3. 26. 2014두42742)
- ② [O] ③ [O]
 -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03. 9. 23. 2001두10936)
- ④ [x]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04. 4. 27. 2003두8821)

정답 ④

15.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방법만을 달리 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 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 ③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정청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 해설||

- ① [×]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u>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u>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u>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u>. (대판 2016. 11. 10. 2016두44674)
- 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 보(제9조)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u>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u> 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③ [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u>내용을</u>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대판(전) 2012. 6. 18. 2011두2361)
- ④ [x]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대판 2010. 12. 23. 2008두13101)

정답 ②

16.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 ㄴ.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다.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행위
- ㄹ.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등록 행위
- ① 7, L
- ② 7, ⊏
- ③ ∟, ⊒
- ④ ⊏, ⊒

|| 해설||

- ① [처분○]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 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은 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접견 시마다 사생활의 비밀 등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교도관의 참여,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피고가 그 우월적 지위에서 수형자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공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대판 2014. 2. 13. 2013두20899)
- © [처분×] 행정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12. 1. 12. 2010두12354)
- ⓒ [처분○]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
 -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의무의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u>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u>이다. (대판 2000, 10, 27, 98두8964)
- ② [처분×]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상표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적·확인적 행위에 지나지 않고, <u>각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상표권 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u>, 위와 같은 말소등록행위에 대하여는 회복등록신청과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므로, <u>이 사건 각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u>. (대판 2015. 10. 29. 2014두2362)

정답 ②

- 17.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②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③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 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된다.
- ④ 판례는 구「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① [○]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적극)
 -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경찰관으로서 의당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판 2008. 6. 12. 2007다64365)
- ② [O]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 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대판 2010. 9. 9. 2008다77795) [비교판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 <u>다</u>. (대판 2015. 5. 28. 2013다41431)
 ③ [x] <u>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u>. 또한 배상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법원에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 ①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〇]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베1899호)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의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 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대판(전) 1970. 1. 29. 69다1203)

정답 ③

18.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③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 ④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 해설||

① [〇]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판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u>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u>. (대판 2009. 5. 28. 2007추134)

- ② [O] 이 사건 조례들은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현 제22조) 단서 소정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2020국회8 (현재 1995. 4. 20. 92현마264,279)
- ③ [x]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조례안 ... 적용을 받는 종사자에 대하여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즉 직업을 선택하여 수행할 권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u>법률의 위임이 있</u>어야 그 효력이 있다. (대판 2009. 5. 28. 2007추134)
- ④ [〇]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이고, 또한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판 2006. 10. 12. 2006추38)

정답 ③

- 19.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다.
-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 ④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행정소송법」제3조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① [O]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017지9하 (대판 2006. 4. 14. 2004두 3847)
- ② [x]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u>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u> (대판 2017. 10. 12. 2015두36836)
- ③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상 <u>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u> ... <u>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 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나 소유 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로써 직접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u>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u>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 (대판(전) 2008. 3. 20. 2007두6342)</u>
- ④ [O]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 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2019지9} (대판 2000. 9. 8. 99두2765)

정답 ②

20.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可.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 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없다.
- □ 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
 □ 집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①¬, ∟
- ②¬, ⊏
- ③∟, ⊏
- ④ㄴ, ㄹ

|| 해설 || 이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 [x]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u>당사자는</u>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이의제기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u>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u> .
(제20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O]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u>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u>하다. (대판 1995. 6. 29. 95누4674)
- © [x]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은 주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인·허가의 <u>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행정재제금의 성격</u>을 가지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2019. 1. 15 개정, 시행 2019. 7. 16]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

과태료의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시효(제15조)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④